

2013년

#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차 례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1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	3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	5
3.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6
II.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7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9
가. 개요 .....	9
나. 추진 절차 .....	9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9
2) 분석평가서 작성 .....	10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10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	11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4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14
(1) 선정 기준 .....	14
(2) 선정방식 및 절차 .....	14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15
2) 분석평가서 작성 .....	18
(1) 분석평가 지표 .....	18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19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35
가. 개요 .....	35
나. 추진 절차 .....	35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35
2) 분석평가서 작성 .....	36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36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	37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40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40
(1) 선정 기준 .....	40
(2) 선정방식 및 절차 .....	40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42
2) 분석평가서 작성 .....	45
(1) 분석평가 지표 .....	45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46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56
가. 개요 .....	56
나. 추진 절차 .....	56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56
2) 분석평가서 작성 .....	57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57
4) 분석평가 결과 종합 .....	58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61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61
(1) 선정 기준 .....	61
(2) 선정방식 및 절차 .....	61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62
2) 분석평가서 작성 .....	65
(1) 분석평가 지표 .....	65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66



II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87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89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	90
3. 정책 개선 .....	91
가. 정책개선의 권고 .....	91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1
다. 정책개선 결과 제출 .....	91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95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97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97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97
2. 분석평가책임관 .....	99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99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99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99
가. 평가기관의 기능 .....	100
나. 평가기관의 지정 .....	101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	103
가. 개요 .....	103
나. 기능 .....	103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105
가. 개요 .....	105
나. 2013년도 교육과정 .....	105
다. 내용 .....	107
리. 교육관리 .....	107
마. 컨설팅 지원 .....	107



V. 참고자료 .....	109
1. 관계 법령 .....	11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111
나.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항) .....	119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	121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	124
마. 통계법(관련 조항) .....	125
2.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사례 .....	127
□ 복지분야 .....	127
□ 보건분야 .....	129
□ 경제활동소득 .....	131
□ 의사결정분야 .....	132
□ 교육직업훈련분야 .....	133
□ 안전분야 .....	134
□ 해외사례 .....	136
3.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	138
가. 국내 사이트 .....	138
나. 국외 사이트 .....	139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3.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2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근거: 영 제3조)

II


III

IV


V

## &lt;추진경과&gt;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기관(10개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 ('05) 53개기관/85개과제 → ('11) 292개기관/2,954개과제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시행('12.3.16)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적용 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2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법령	제·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li>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제·개정 자치 법규안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 법규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li>• 분석평가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계획	중장기 계획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li>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중장기 계획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li>• 분석평가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사업	주요 정책· 사업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li>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li> <li>• 분석평가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li> </ul>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협조</li> <li>•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li> <li>•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li> </ul>
분석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분석평가결과 종합·제출 (익년도 2월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li> </ul>

II

III

IV

V

3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1)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작성·제출(영 제6조)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2)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법 제12조 및 영 제9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II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
  - \* 해당 법령안의 관계 부처 협의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
  - \* 해당 자치 법규안의 관계 부서 협의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나. 추진 절차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중앙행정기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안 입안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
  - \* 분석평가 제외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법안 입안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제출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
  - \* 분석평가 제외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 가능

## 2) 분석평가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 제·개정하는 법령 중 분석평가 대상인 경우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령안 부처 협의 시 여성가족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 중 분석평가 대상인 경우 관련 부서 협의 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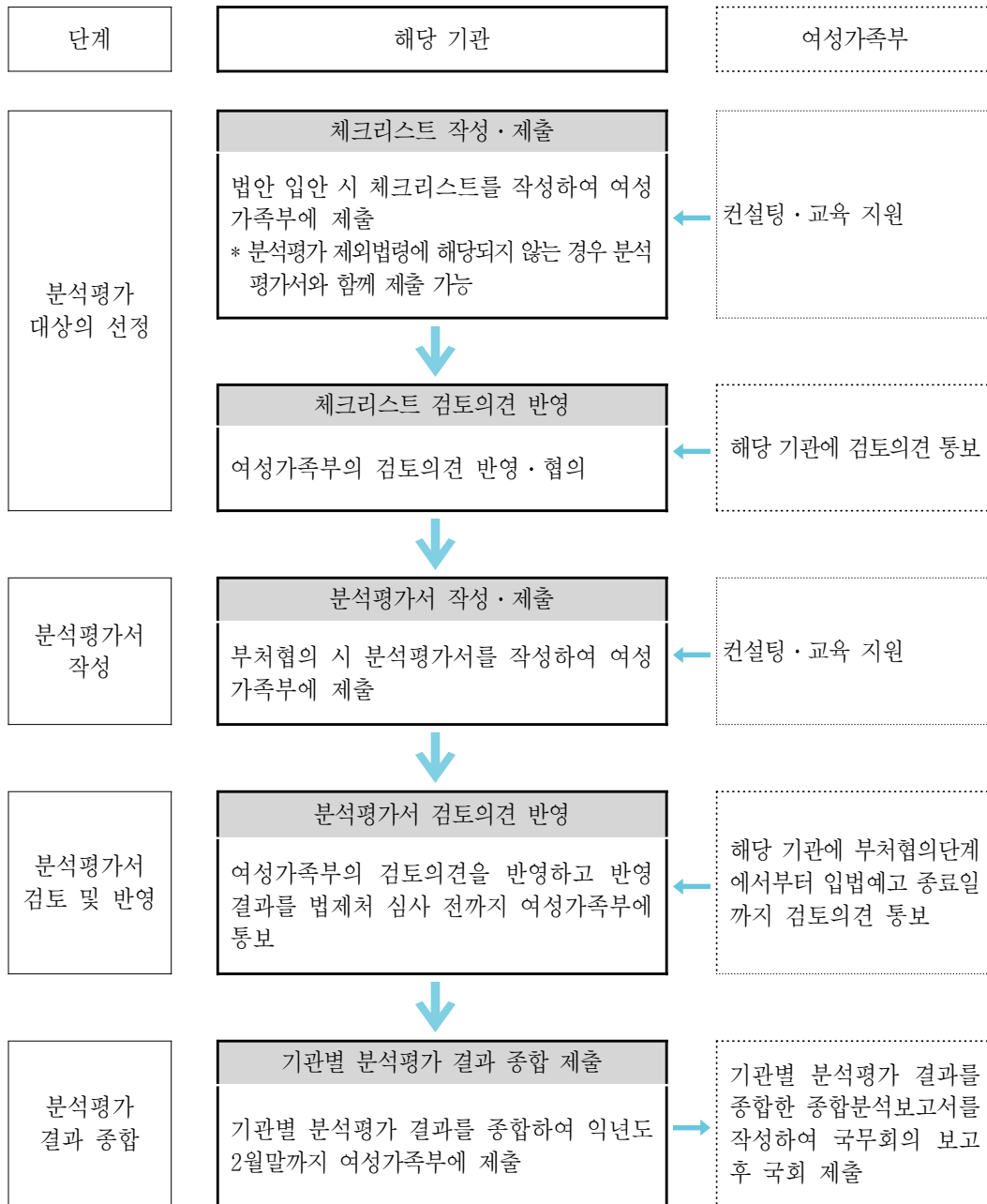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하며,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의견의 경우 반영결과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의거, 법령안 심사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관련 사항 첨부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 4) 분석평가 결과 종합(영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 결과를 제·개정 법령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결과를 제·개정 자치 법규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중양행정기관



\*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에서 지원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 지방자치단체



\*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에서 지원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법령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 다만 행정 기관 내부 운영·관리 및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제외


선정 기준	
제외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li> </ul>

\* 2013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2) 선정방식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며, 분석평가책임관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분석평가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제외 법령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를 종료하고, 제외 법령이 아닌 경우 분석평가 실시

##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 일간)	
	입법예고	~ ( 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 외 법 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3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			

☀ 작성 요령

- 제·개정되는 법령이 제외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 법령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기재

## ❁ 작성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영상콘텐츠산업과 성명/전화번호: 홍○○/02-2150-0000
	담당자	부서명: 영상콘텐츠산업과 성명/전화번호: 김○○/02-2150-0000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2. 7.11 ~ 2012. 7.21(10일간)
	입법예고	2012. 7.22 ~ 2012. 8.31(40일간)
	법제처 심사*	2012. 9.7 ~ 2012. 10.6(30일간)
붙임 자료	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 외 법 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으로 법령 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을 위한 개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 분석평가서 작성

### (1) 분석평가 지표

- 제·개정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에 대해 6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점검</li> </ul>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li> <li>◦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li> <li>◦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li> </ul>
II.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점검</li> </ul>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li> <li>◦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li> <li>◦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li> <li>◦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고정관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li> </ul>
III.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요건 조항 등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자격·요건 조항 등이 있는지 점검</li> </ul>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의 자격·요건 조항 등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지 점검</li> <li>◦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위원 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등 점검</li> <li>*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정안전부, '11.6월) 참조(여성위원 40% 이상 도달)</li> <li>◦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특성 반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li> </ul>

##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①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 I. 개 요

##### 제·개정 목적

○

○

##### 제·개정 주요 내용

○

○

##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 구분

#### 1. 성별 구분 조항

<해당 조항>

○

####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	-----

--	--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 ② 작성 요령 및 사례

- 제·개정되는 조항이 6개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하고 필요성 및 분석 근거란에 그 근거도 함께 기재
  -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
- 해당 여부란에 해당 여부를 체크한 경우, 해당 조항란에 관련 조항을 모두 기재

 작성 요령

## I. 개요

- 제·개정 목적
  -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
- 주요 제·개정 내용
  -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

##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성별 구분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성별 구분 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개정하는 법령 조항에 반영
    -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2 성별 고정관념

###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 제·개정 법령의 내용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 \* 예시 :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를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

###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한 조항이 있을 경우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개정하는 법령 조항에 반영

## 3 성별 특성

###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자격·요건 조항 등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자격·요건 조항 등이 있는지 점검

###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자격·요건 조항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자격·요건 조항이 추가로 필요한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 법령상의 자격·요건 조항 등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지 점검
  - \* 예시 : 사회보험제도에서 최소기여기간을 늘려 급여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경우 단기간 근로,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여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법령에 규정하는 조치가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
  - \* 예시 : 건강검진 또는 진료에 대한 규정에서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발병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
- 연령, 종교, 인종, 거주지역, 소득, 교육수준, 신체적 조건 등 차이 또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언급한 규정의 경우 성별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
-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위원 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정안전부, 11.6월) 참조(여성위원 40% 이상 도달)



❁ 작성 사례(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보건복지부, 2012)

I. 개요

□ 제·개정 목적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 외부추천 세부 절차,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시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제·개정 주요 내용

- 사회복지법인 이사 외부추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함(안 제8조의2)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남편 및 부계혈족 중심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남편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함(안 제9조제1항)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 <해당 조항>

-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라. 처의 3촌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2.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구분하여 모계친족보다 부계친족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자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는 친족범위 규정 시 모계친족보다 부계친족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결혼한 여자의 경우 본인의 친족관계가 아닌 남편의 친족관계에 따르도록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남녀간 구분 없이 양성평등원칙에 맞게 정비 필요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li> <li>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li> <li>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li> <li>라. 처의 3촌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li> </ul> </li> </o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6촌 이내의 혈족</li> <li>나. 4촌 이내의 인척</li> <li>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li> </ul> </li> </ol> </li> </ul> </li> </ul>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사항 없음

## ❁ 작성 사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용노동부, 2012)

### I. 개요

#### □ 제·개정 목적

-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남편의 연령제한을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와 동일하게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자녀 등의 수급자격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 제·개정 주요 내용

- 남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처와 동일하게 함(안 제63조제1항)
- 자녀 등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시기 등을 감안하여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 구분

##### 1. 성별 구분 조항

#### □ <해당 조항>

-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로 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편의 경우 연령제한을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규정 시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남녀 배우자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연령제한 삭제 필요
  - \* 「국민연금법」은 남녀 배우자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2007년 개정)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p>○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p> <p>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u>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u>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u></p>	<p>○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p> <p>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u>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u>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u></p>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해당 조항>

- 해당사항 없음



I

II.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III

IV

V

4.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해당 조항>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사항 없음

작성 사례(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대전광역시 유성구, 2012)

I. 개요

□ 제·개정 목적

-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 내용

-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자살예방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구분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사항 없음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사항 없음

**2** 성별 고정관념

##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우리나라의 성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은 남성 41.4명, 여성 21.0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지만, 자살 생각률(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10.5%, 여성 21.5%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통계청, 「사망 원인통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연령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므로, 성별 자살률 및 자살 생각률 등 성별 차이를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



□ <해당 조항 개선안>

현행	개선안
<p>○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li> <li>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li> <li>3. <u>연령별</u>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li>5. 자살예방센터 운영</li> <li>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li> </ol>	<p>○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li> <li>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li> <li>3. <u>성별·연령별</u>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li>5. 자살예방센터 운영</li> <li>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li> </ol>

##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
  - 각 기관은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영 제4조)

### 나. 추진 절차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중앙행정기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안 마련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회신
    - \*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으로 명칭하는 계획에 대해 작성
    - \* 분석평가 제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안 마련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제출받은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
    - \* 분석평가 제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분석평가서와 함께 제출 가능

## 2) 분석평가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 해당 계획의 주관부처는 선정된 대상 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안 마련 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계획 확정 2개월 전까지)
  - \*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지방자치단체] 해당 계획의 주관부서는 선정된 대상 계획에 대하여 계획 수립안 마련 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계획 확정 2개월 전까지)
  - \*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를 해당 계획의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
    -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의견의 경우 반영결과를 해당 계획 확정 전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반영결과를 해당 계획 확정 전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 4) 분석평가 결과 종합(영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중상행정기관



\*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에서 지원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



\*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에서 지원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해당 계획의 수립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제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li> </ul> </li> </ul>
대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li> </ul>

\* 대상 계획(예시)

- 인력 양성(전문가 활용 포함)이나 교육훈련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취·창업 활성화·신규산업 촉진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의사결정기구 구성·운영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수혜자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시설·건물·건축물의 설비 확충·개선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조사·통계정보 구축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 자원 이전(보조금, 연구비 등 현금 및 현물) 관련 사업 및 관련 제도 수립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2) 선정방식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며, 여성가족부는 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며,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제외 계획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를 종료하고, 대상 계획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 추진

I

II.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III

IV

V



###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	재수립( )차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관계기관	부관명: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 일간)
	계획안 마련	~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상 계획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차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

☀ 작성 요령

- 수립하는 계획이 분석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 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대상 계획 작성 없이 종료
  - 제외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대상 계획 여부 작성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상별영향분석평가

Ⅲ

Ⅳ

V

❁ 작성 사례

보건복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구분	신규 수립( )	재수립( 2 )차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홍○○/02-2023-0000
	관계기관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02-2110-0000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02-2100-0000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02-2075-0000
		기관명: 농림부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최○○/02-500-0000
		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오○○/02-2156-0000
계획 수립 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0.5 ~ 2010.9 (150일간)
	계획안 마련	2010.5 ~ 2010.9 (150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2010.9.20 ~ 2010.9.30 (10일간)
붙임 자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대상 계획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임신·출산지원, 취약계층아동지원,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기회 제공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차개선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교통 환경 조성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 2) 분석평가서 작성

## (1) 분석평가 지표

-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5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li> </ul>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li> <li>○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li> <li>○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li> </ul>
II. 전략 및 중점과제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li>○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li> </ul>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①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I. 개요

비전과 목표

○ ※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전략 및 중점과제

○ ※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I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분석 근거>

○

### Ⅲ.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 요구도

※ 아래 사항은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2-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사업대상: \_\_\_\_\_ \*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분석평가 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 ② 작성 요령 및 사례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한 후 분석근거도 함께 기재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작성

## 🌀 작성 요령

### I. 개요

- 비전과 목표
  -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 기술
-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 기술

### II. 비전과 목표

####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

### III. 전략 및 중점과제

#### 1️⃣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예시 :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남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예시 :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계획의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예시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성별 형평성

### 3.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계획 수립 시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4. 법령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 작성 사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3~2017)

I. 개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 영역	중점 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I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청소년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하며,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중립적인 목표를 수립함. 다만, 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안전에 대한 위험도 등 생활환경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과제에 반영할 필요

### III.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 요구도

#####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크게 느끼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성별로 상이함(자료: 통계청, 2008 사회조사). 따라서 가출, 학교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점과제 추진 시, 여자청소년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완 필요

###### <성별·연령대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구분		불안	보통	안전
여성	10대 이하	60.8	28.4	10.7
	20대	59.5	29.6	10.8
	30대	56.1	30.8	13.0
	40대	48.1	32.8	19.1
	50대	43.2	32.1	24.6
	60대 이상	34.2	30.3	35.6
남성	10대 이하	31.3	34.1	34.7
	20대	24.2	39.8	36.0
	30대	33.8	40.7	25.4
	40대	33.6	36.2	30.2
	50대	30.3	35.0	34.7
	60대 이상	27.7	30.6	41.6

-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여자청소년(43.5%)이 남자청소년(27.6%)에 비해 외모에 대한 고민 비중이 높으므로(통계청, 2010 사회조사),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

2-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여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및 지원 확대 필요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위기 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학습권을 박탈당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미혼모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임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석 및 휴학인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0 사회조사), 우울증상 경험률(여성 19.1%, 남성 7.9%) 및 자살 생각률(여성 21.7%, 남성 8.5%)도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성별로 상이하므로(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영향조사),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청소년(9~24세)\*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10,359,681명	10,359,681명	10,197,036명	10,197,036명
여성(비율)	4,894,924명(47.2%)	4,894,924명(47.2%)	4,817,063명(47.2%)	4,817,063명(47.2%)
남성(비율)	5,464,757명(52.8%)	5,464,757명(52.8%)	5,379,973명(52.8%)	5,379,973명(52.8%)

\* 통계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및 수혜자의 경우 여성 47.2%, 남성 52.8%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계획수립 필요

##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점과제에 여자 청소년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 내용 반영</li> <li>○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 강화 중점과제에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내용 반영</li> <li>○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및 지원 확대 방안 반영</li> <li>○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중점과제에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출석 및 휴학인정 등 제도적 방안 반영</li> <li>○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중점과제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반영</li> </ul>

## 3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분석평가 실시(영 제2조 제1항 및 영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까지 분석평가 실시(영 제4조)

## 나. 추진 절차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각 기관은 분석평가 대상 선정 등을 위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필요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
  - '13년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최소 '12년 과제수 이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14년 예산안)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 '13년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최소 '12년 과제수 이상)

\*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세부사업으로 작성 가능(단, 사업명은 단위사업명 기재)

## 2) 분석평가서 작성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 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 중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제출(5월말까지)

\*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각 기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10월말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일정을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운영

\* 분석평가서 작성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3)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

\*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

\* 필요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음

- 해당 부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분석평가 책임관에게 제출



#### 4) 분석평가 결과 종합(영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당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제출
-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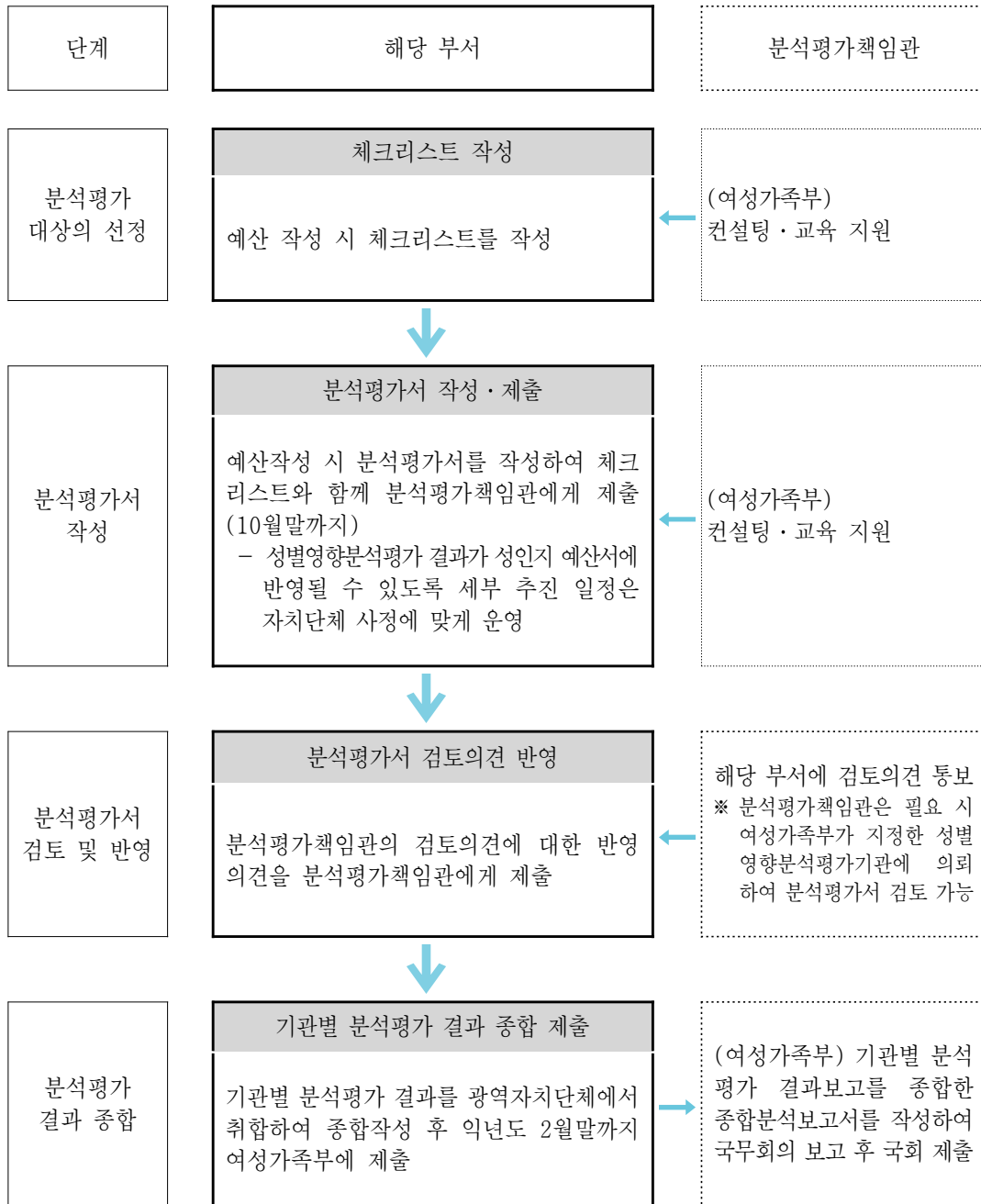
### 중양행정기관



\*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에서 지원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



\* 컨설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에서 지원

##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1) 선정 기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li> </ul> </li> </ul>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설치·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공원, 도로, 주거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li> </ul> </li> </ul>

\* 각 기관은 분석평가 대상 선정 등을 위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필요

#### (2) 선정방식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 추진
- [지방자치단체]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 추진

### (3)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계획</li> </ul>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작성 요령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분석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1단계 제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2단계는 작성 없이 종료
  - 1단계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2단계의 해당 여부 작성

❁ 작성 사례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농기계훈련사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홍○○/031-299-0000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홍○○/031-299-0000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훈련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li> </ul>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확대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 정비기술 및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과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기계 이용률 및 정비·수리능력 향상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2) 분석평가서 작성

### (1) 분석평가 지표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li>○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li>○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ul>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li>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li> </ul>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반영 등</li> </ul>
	4.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5.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반영 등</li> </ul>



(2)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작성 요령 및 사례

①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I. 개 요

사업 목적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추진 근거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2년(A)	2013년(B)	증감(B-A)

\*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안(B) 작성

##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b>1</b>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b>2</b>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 요구도

※ 아래사항은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사업대상: \_\_\_\_\_ \*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2013년 사업수혜 작성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1년	2012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2013년 예산배분 작성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② 작성 요령 및 사례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있음’으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한 후 분석근거도 함께 기재
-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평가항목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작성

☼ 작성 요령

I. 개요

- 사업 목적
  - 해당 사업의 목적 기재
  
- 추진 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 주요 사업 내용
  - 해당 사업의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I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예시 :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남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예시 :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 도출

\* 예시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평균수명이나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병률이 달라 보건, 안전 등 이슈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성별 형평성

###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사업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

– 사업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도출

–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 예시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4. 법령(지침포함)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5. 예산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 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 예시 :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방안(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반영 등)

## ❁ 작성 사례(1)

농업인대학 운영(농촌진흥청, 2012)

### I.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현장의 기술 애로 해결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
-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당 1~3개 과정을 개설하며, 6~12개월, 100시간 이상의 중장기 심화교육으로 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2년(A)	2013년(B)	증감(B-A)
농업인대학 운영	2,173	2,000	△173

###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b>1</b>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b>2</b>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1** 성별 요구도

#####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농촌문화, 노동집약적인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 농기계 조작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도 차이 발생
  - 여성농업인의 경우 스스로를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 농업분야의 기술 및 정보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 및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교육형태 다양화 필요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대부분 농가경영주(사업주)는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수단이 남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농가 경영주의 동업자 교육 독려 및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한 교육형태 다양화 필요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여성은 농기계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숙련도 차이 및 신체적 차이로 인해 주로 소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이 많고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축산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 저조
- 식품발효, 생활원예, 전통식품, 농산물가공, 발효식품 등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필요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 사업대상: 농업 종사자\*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2,599,176명	12,257명	2,599,176명	13,000명
여성(비율)	1,338,352명(51.5%)	4,355(35.5%)	1,338,352명(51.5%)	4,810명(37.0%)
남성(비율)	1,260,824명(48.5%)	7,902(65.5%)	1,260,824명(48.5%)	8,190명(63.0%)

\* 통계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 농가/성별 농가인구)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전체 사업 수혜자 비율에 있어서 여성(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형태 마련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lt;분석 근거&gt;

○ 예산배분

	2011년	2012년
전체	2,050백만원	2,180백만원
여성(비율)	726백만원(35.4%)	807백만원(37.0%)
남성(비율)	1,324백만원(64.6%)	1,373백만원(63.0%)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사업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인대학 과정을 개설할 경우 사업수혜와 같이 예산 수혜에서도 여성의 비율(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에 우선적 예산배분 필요

##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 규정</li> <li>○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性)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li> </ul>
5.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대학 평가 시 여성의 교육 참여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예산 차등화</li> <li>○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li> </ul>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식품발효, 생활원예, 원예치료, 전통식품, 농산물가공, 발효 식품 등) 확대·개설</li> <li>○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해 부부 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실시</li> <li>○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및 여성비율 쿼터제(20% 이상) 권고·실시</li> </ul>

❁ 작성 사례(2)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대전광역시, 2012)

I. 개요

- 사업 목적
  - 골목재생사업을 통해 낡고 침체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정서를 담은 스토리 개발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 근거
  - 시장방침(2011.8월)
- 주요 사업 내용
  - 골목재생사업은 단순한 시설개설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낙후한 골목을 특성화된 가로로 만들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동구 한의약인쇄거리, 중구 대흥동 골목길, 대덕구 정려의 길)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3년(A)	2014년(B)	증감(B-A)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5,413	6,000	587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b>1</b>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b>2</b>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돌봄 역할 및 가사일 병행으로 인해 여성은 자녀 이동, 은행·병원가기, 시장·쇼핑 등으로 남성 에 비해 통행 횟수는 많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의 통행이 많은 특성을 보임
  - 또한 통행수단 이용의 경우, 여성은 승용차 탑승, 걷기, 시내버스 이용 등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은 승용차 운전, 지하철 이용이 높게 나타남

- 보행 안전에 대한 상대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녁시간대에 정점에서 통행의 급격한 감소를 보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골목재생사업 추진 시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유모차 등을 고려한 보도 포장재료 사용 및 흙, 급경사 등의 보도개선,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등 필요

## 2 성별 형평성

###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골목재생사업지역의 거주 인구\*

	2012년		2013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107,087명	107,087명	104,808명	104,808명
여성(비율)	53,623명(50.1%)	53,623명(50.1%)	52,482명(50.1%)	52,482명(50.1%)
남성(비율)	53,464명(49.9%)	53,464명(49.9%)	52,326명(49.9%)	52,326명(49.9%)

\* 통계출처: 대전광역시(2012)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골목재생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로 볼 수 있으며, 인구현황을 볼 때 여성(50.1%)과 남성(49.9%)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행특성 등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업 운영 필요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2년	2013년
전체	3,000백만원	5,413백만원
여성(비율)		
남성(비율)		

\*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예산배분의 성별구분 곤란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보도개선 등에 우선적 예산배분 필요

I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골목재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사업지침에 규정
5. 예산 반영 계획	○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보도개선 등에 우선적 예산배분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유모차 등을 고려한 보도 포장재료 사용 및 홈, 급경사 등의 보도개선,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등

## 붙임 1

&lt;법령·계획·사업의 검토의견 통보 양식&gt;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정책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부)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type="checkbox"/> 원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 의견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 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2-2075-0000)		
○○○○ 귀하		

**붙임 2** <법령·계획·사업의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양식>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b>		
관리번호*	※ 검토의견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책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요 분석평가 내용 (○○부)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반영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기관명                 </div>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 붙임 3

&lt;법령·계획·사업의 종합 결과 보고 양식&gt;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결과 보고				
소관부서	기관명			
	작성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붙임자료	1. 법령·계획·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목록 및 체크리스트(전체) 2. 법령·계획·사업별 분석평가서 작성 목록 및 분석평가서(전체) ※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도 함께 제출			
I.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input type="checkbox"/>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건수)</div>			
		법령	계획	사업
	1. 전체			
	2. 분석평가	원안동의		
개선의견				
반영결과				
<input type="checkbox"/> 총평(※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input type="radio"/> 잘된 점  <input type="radio"/> 미흡한 점				



II. 정책개선  
현황

정책별 개선 현황

○ 법령

순번	법령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계획

○ 계획

순번	계획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계획

○ 사업

순번	사업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개선계획

<p>Ⅲ. 정책 개선 우수 사례</p>	<p><b>사례 1(정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b></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정책 개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p><b>사례 2(정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b></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정책 개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 ☀ 작성 요령

### I. 분석평가 추진현황(총괄)

####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 1. 전체

- 법령, 계획, 사업별 분석평가 과제수 기재

##### 2. 분석평가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별(원안동의, 개선의견) 분석평가 실시 건수를 기재하고, 반영결과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 수 기재

#### □ 총평

- 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기재

### II. 정책 개선 현황

#### □ 정책별 개선 현황

- 주요 개선실적은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개선실적과 분석평가서 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실적을 모두 기재
  - \* 법령·계획 : 당해 연도에 반영된 실적
  - \* 사업 : 중앙행정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실적
- 향후 개선계획은 분석평가 결과 도출한 자체 개선안 및 분석평가서 검토 의견에 대해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

### Ⅲ. 정책 개선 우수 사례

#### □ 주요 내용

- 기관별로 2~3개의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 기재

#### □ 주요 정책개선 내용

- 기관별로 2~3개의 정책 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정책 개선 내용 기재





### Ⅲ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3. 정책 개선



###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법 제10조 및 영 제7조)

##### 가.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나. 대상 정책

- 성별 격차가 크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

##### 다. 대상 정책의 확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
  - \* 부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참석 가능

##### 라. 특정평가 방법

-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I

II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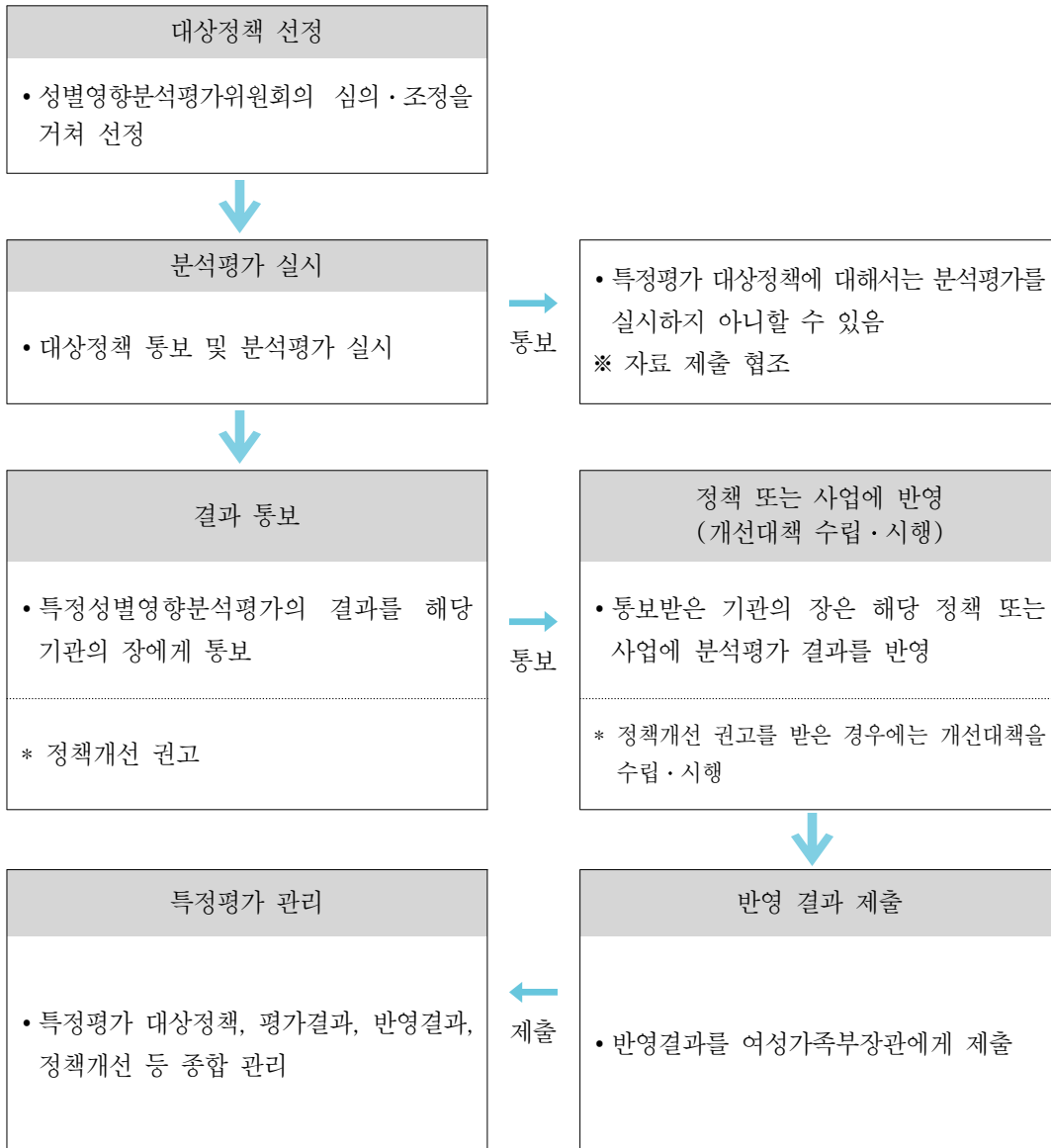


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여성가족부>

<해당기관>



### 3 정책 개선(법 제11조 및 영 제8조)

#### 가. 정책개선의 권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 기한을 정하여 권고

####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 다. 정책개선 결과 제출

- 정책개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개선 대책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I

II

II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IV

V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정책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대상기관	기관명, 부서명 1	
	기관명, 부서명 2	
	기관명, 부서명 3	※ 대상기관 추가 가능
분석평가 기간	○○○○. ○○. ○○. ~ ○○○○. ○○. ○○.	
분석평가의 필요성		
분석평가 주요결과	※ 분석평가서 첨부 가능	
정책개선 권고	○ 권고사항	
	○ 개선기한 :    년    월    일까지	
	○ 권고사항	
	○ 개선기한 :    년    월    일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여성가족부장관</p> <p style="margin-left: 100px;">(담당자/연락번호 : ○○○/02-2075-0000)</p> <p>○○○○    귀하</p>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결과		
관리번호	※ 결과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책명		
소관기관	기관·부서명	
	부서장명/전화번호	
	담당자명/전화번호	
분석평가내용 (요약)	분석평가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통보한 내용을 정리
	정책개선 권고사항	※ 통보된 결과에 정책개선 권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반영결과	분석평가 결과 반영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내용을 해당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기재
	정책개선 대책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 정책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시행한 내용 (정책개선 권고 내용과 대응 필요)
년 월 일		
기관명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I

II

II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IV

V





## IV

#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2. 분석평가책임관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법 제13조)

-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둠
- 2) 기능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0조 및 영 제11조)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I

II

III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V



○ 위 원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 · 국무총리실 ·  
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
-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2)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

## 분석평가책임관(법 제14조, 영 제12조)

##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정현황 통보 양식

기관명	분석평가책임관					작성자(기관담당자)				
	직위	직급	성명	성별	전화번호	소속과(담당관)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I

II

III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V

## 3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 가. 평가기관의 기능

##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지역센터 관리·지원 및 전국 센터 네트워크 구축
  - 전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역센터 모니터링 및 평가
  -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센터 미지정 지역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업무
  - 대표전화(1899-3855) 운영·관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업무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정책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컨설팅 방향 설정 지원,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대표전화(1899-3855) 운영·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단위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평가기관의 지정

- 1)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 2)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4) 지정 대상
    - 국·공립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련사항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참조

※ 평가기관 지정현황('12. 12월 기준, 16개 지역 총 17개소)

지역	평가센터명	지정일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 5.10
	서울여성가족재단	'10. 11. 5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8. 10. 20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2. 6. 25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12. 3. 20
광주	광주여성재단	'11. 9. 5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12. 3. 20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12. 5. 21
경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08. 5. 10
강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09. 6. 1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8. 5. 10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12. 5. 21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0. 11. 5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0. 1. 15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12. 3. 20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12. 4. 17
충북	충북여성발전센터	'12. 9. 8

## 4

##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 가. 개요

-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 사이트주소 : [gia.mogef.go.kr](http://gia.mogef.go.kr)
- 이용구분
  - 사용자 : 공무원(기관 담당, 업무 담당), 컨설턴트, 전문가 등
  - 운영자 : 여성가족부 운영자, 관리자
-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매뉴얼은 별도 배포

## 나. 기능

## 1) 분석평가

- 체크리스트를 통한 대상정책 선정
- 정책의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
-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제출 및 성인지 예산서 첨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반영 내용 제출

## 2) 컨설팅

- 분석평가 각 과정에서 컨설팅 요청 및 확인

## 3) 운영 지원

-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현황 관리
-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 관리

I

II

III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V

#### 4) 분석평가의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서 컨설턴트 지정을 통한 컨설팅 관리
- 각 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홈페이지 관리
  - 평가기관 직원 중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알림마당, 공유게시판을 통한 정보 제공

#### 5) 정보 공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및 우수사례 공개
- 게시판과 쪽지 기능 마련으로 회원 간 의사소통 공간 확대

## 5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법 제15조, 영 제13조)

##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횟수 : 연 1회 이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나. 2013년도 교육과정(여성가족부 주관)

- 담당자 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계획 수립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후 별도 문서를 통하여 교육수요 조사

I

II

III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V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총계 15개 과정					
기본 교육	소계 2개 과정				
	관리자 교육	고위정책과정(4급이상)		중앙 및 지자체 4급이상 공무원(책임관 포함)	3월 9월
		관리자과정(5급)		중앙 및 지자체 5급 공무원	3월 9월
	소계 6개 과정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교육		중앙 및 지자체 분석평가 기관담당 공무원	1~5월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중앙 공무원	2월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기본교육	지자체 공무원	7~9월
			실습형교육		
		법령 관련 업무담당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3월 9월
	계획 관련 업무담당자				
	소계 2개 과정				
	성인지 예결산 교육	성인지결산 사업담당자		중앙 공무원	1월
		성인지예산 사업담당자		중앙 공무원	5~6월
	전문 교육	소계 3개 과정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기본과정		컨설턴트
컨설턴트 양성과정			컨설턴트 또는 컨설턴트 희망자	2~3월	
컨설턴트 심화과정			컨설턴트	5월	
위 크 숍	소계 1개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 워크숍		중앙 및 지자체공무원, 지역센터	6월	
순회 교육	소계 1개 과정				
	찾아가는 순회교육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상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다. 내용

- 당해연도 분석평가 추진방향 및 지침 이해
- 분석평가 및 정책의 성별 관련성 이해
-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이해
- 정책·예산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작성
- 사업유형별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실습 등

## 라. 교육 관리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교육을 총괄하며, 매년 교육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적 제출시기
  - 상반기 교육실적 : 해당연도 7월말까지 제출
  - 연간 교육실적 : 익연도 2월말까지 제출(종합분석보고서 제출시)
- 교육실적 제출양식

기관명	구 분	횟수(회)	인원(명)			
			대상인원			교육순인원
			소 계	5급이상	6급이하 (기타)	
	합 계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교육					

- ※ 위탁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소속 직원이 참여한 경우
- ※ 자체교육 :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직장교육, 워크숍 등으로 실시한 교육(강사초빙, 내부강사 활용 가능)
- ※ 찾아가는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 대상인원 :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 교육순인원 :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인원(ex. 2회 실시한 교육에 총 100명이 참석하였는데 2회 교육에 모두 참석한 인원이 20명이라면 교육 횟수는 2회, 교육순인원은 80명)

## 마.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1899-3855)





## 참 고 자 료

1. 관계 법령
2.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사례
3.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 1 관계 법령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 른	시행령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li> <li>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li> </ol>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b></p>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p> <p>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li> <li>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li> <li>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li> <li>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li> </ol>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li> <li>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li> <li>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li> <li>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법 률	시행령
<p>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li> <li>2. 성별 수혜분석</li> <li>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li> <li>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li> <li>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li> <li>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li> <li>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 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li> </ol>
<p>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li> <li>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li> <li>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li> </ol>
<p>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p>	<p>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p> <p>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p>

법 률	시행령
<p>②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종합분석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b></p>	
<p>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b>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b>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li> <li>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li> <li>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li> <li>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li> </ol> <p>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p>	<p>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li> <li>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li> </ol>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법 률	시행령
<p>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칙 &lt;법률 제11046호, 2011.9.15&gt;</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 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p> <p>②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p>

## 나. 여성발전기본법(관련 조항)

법 른	시행령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p>	
<p>제6조(적극적 조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p>	
<p>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0조의2(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p>	<p>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지정된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p>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법 른	시행령
<p>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p> <p>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성인지 예산의 개요</p> <p>2. 성인지 예산의 규모</p> <p>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p> <p>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p>
<p>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③ 생략</p>	<p>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p> <p>①~④ 생략</p> <p>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9 생략</p> <p>10. 성인지 예산서</p>
<p>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성인지 예산서</p> <p>10~14 생략</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②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p> <p>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p>	<p>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p>

법 률	시행령
<p>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          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 I
- II
- III
- IV

V. 참고자료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법 률	시행령
<p>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p>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p>부 칙</p> <p>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p>	<p>부 칙</p> <p>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p>

## 마. 통계법(관련 조항)

법 른	시행령
<p>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li> <li>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li> <li>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li> <li>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li> </ol> <p>②생략</p>	<p>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li> <li>2. 지방자치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li> <li>나. 시·군·자치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i> </ol> </li> <li>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li> </ol> <p>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p>	

I

II

III

IV

V. 참고자료

법 률	시행령
<p>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 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li> </ol> <p>③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 복지분야

### ○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양성평등하게 적용 기준 변경(보건복지부,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기준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가구를 인정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li> <li>-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딸 등</li> <li>- 출가한 딸 등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li> </ul> <p>※ 별도가구인정이란 같이 살고 있어도 각각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적용</p>	<p><b>&lt;별도가구 인정 범위를 남성에게도 확대&gt;</b></p> <p>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가정에 대한 특례인정을 한부모 가정으로 개선</li> <li>- 출가한 딸 가구와 친정부모에게만 적용하던 별도가구 인정을 출가한 아들·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li> </ul>
<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할 경우, 아들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이 40%이나, 출가한 딸의 경우 15%를 부과하여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였다.</p> <p>※ 부양비 부과비율 :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적용</p>	<p><b>&lt;아들의 부양비 부과 비율 인하&gt;</b></p> <p>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되는 아들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을 40%에서 30%로 인하함으로써 출가한 딸과의 차등 수준을 다소 완화하였다.</p>

I

II

III

IV

V. 참고자료

## ○ 사례

### 남성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사 추가 파견(경기도,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기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있다.</p> <p>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대체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경우가 많으나, <b>남자 독거노인의 경우 오히려 노후에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노인복지회관 등의 여가시설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b></p> <p>더욱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109.6명)은 OECD 국가 평균(60.4명)에 비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008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자료) 특히 <b>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높았다.</b></p> <p>※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십만명당 자살인원)</p> <table border="1" data-bbox="236 1205 737 1395"> <thead> <tr> <th>연령</th>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60~64세</td> <td>72.7</td> <td>22.6</td> </tr> <tr> <td>65~69세</td> <td>90.1</td> <td>29.0</td> </tr> <tr> <td>70~74세</td> <td>112.7</td> <td>40.4</td> </tr> <tr> <td>75~79세</td> <td>144.8</td> <td>61.4</td> </tr> <tr> <td>80세 이상</td> <td>213.8</td> <td>92.7</td> </tr> </tbody> </table> <p>(출처: KOSIS 사망원인통계, '09)</p>	연령	남성	여성	60~64세	72.7	22.6	65~69세	90.1	29.0	70~74세	112.7	40.4	75~79세	144.8	61.4	80세 이상	213.8	92.7	<p>경기도는 마땅히 외로움을 해소연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특히 남성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b>46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b></p>
연령	남성	여성																	
60~64세	72.7	22.6																	
65~69세	90.1	29.0																	
70~74세	112.7	40.4																	
75~79세	144.8	61.4																	
80세 이상	213.8	92.7																	

## □ 보건분야

## ○ 사례

## 여성암 검진기관 조건 완화(보건복지부, 2004)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실시되고 있다.</p> <p>그러나 2001년 우리나라의 2년간 유방암 조기 검진 수검율은 22.3%, 자궁경부암 41.8%로, 미국에서 1987년에 조사된 지난 3년간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수검률 88%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p> <p>특히 자궁경부암 수검률은 농촌지역, 저학력, 저소득 계층일수록 현저하게 낮아지며, 국가 5대 암검진 사업에 대한 인지도 면에서도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지도도 낮았다.</p>	<p>이에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 기관 조건을 일반건강검진기관 조건이 없더라도 자궁경부암·유방암 검진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개별 인정토록 완화함으로써 여성검진기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다.</p> <p>또한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가는 유방암 이동검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어 암 검진 취약지역에서도 손쉽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p>																									
<p>* 국가 5대 암검진 사업에 대한 인지도</p> <table border="1" data-bbox="236 1108 738 1624">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여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교육 수준</td> <td>초졸이하</td> <td>57.8%</td> </tr> <tr> <td>중졸</td> <td>66.4%</td> </tr> <tr> <td>고졸</td> <td>79.4%</td> </tr> <tr> <td>대졸이상</td> <td>78.9%</td> </tr> <tr> <td>전체</td> <td>68.0%</td> </tr> <tr> <td rowspan="5">소득 수준</td> <td>100만원이하</td> <td>59.8%</td> </tr> <tr> <td>100~200만원이하</td> <td>71.4%</td> </tr> <tr> <td>200~300만원이하</td> <td>69.7%</td> </tr> <tr> <td>300만원 이상</td> <td>78.0%</td> </tr> <tr> <td>전체</td> <td>68.0%</td> </tr> </tbody> </table>	구분		여자	교육 수준	초졸이하	57.8%	중졸	66.4%	고졸	79.4%	대졸이상	78.9%	전체	68.0%	소득 수준	100만원이하	59.8%	100~200만원이하	71.4%	200~300만원이하	69.7%	300만원 이상	78.0%	전체	68.0%	
구분		여자																								
교육 수준	초졸이하	57.8%																								
	중졸	66.4%																								
	고졸	79.4%																								
	대졸이상	78.9%																								
	전체	68.0%																								
소득 수준	100만원이하	59.8%																								
	100~200만원이하	71.4%																								
	200~300만원이하	69.7%																								
	300만원 이상	78.0%																								
	전체	68.0%																								
<p>(출처 : 국가 암관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04)</p>																										

I

II

III

IV

V. 참고자료



## ○ 사례

###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남성 포함)

(울산 남구, 2010 → 2011)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질환별 수검자 보고양식에 남녀성별구분없었음 골다공증검진에 남성을 고려하지 않음	질환별 수검자 보고양식에 남녀성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 변경 골다공증 유병율, 골감소 유병율을 성별로 파악하여 남성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남성의 골다공증 검진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성의 검사항목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높임

## ○ 사례

### 성별 맞춤형 도민 건강검진(전라북도,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전라북도는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대상의 건강검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은 기초검사, 간기능 검사를 비롯하여 남녀 모두에게 발병률이 높은 간암검사, 신장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b>질병 및 질환은 성별 관련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리가 요구</b> 된다.	따라서 전북은 2008년도에 40~75세 미만 <b>저소득층 남성을 위하여 2차에 걸친 전립선 암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b> 하였으며, <b>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여성의 다발적 질환인 갑상선 기능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리</b> 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b>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도 신규 사업으로</b> 추진하였다.

□ 경제활동·소득

○ 사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여성기업의 접근성 제고(중소기업청, 2006)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성과와 신용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p> <p>그러나 여성기업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생계형 업종이지만, <b>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 등은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여성기업의 수혜율은 미미하다.</b></p> <p>※ 여성기업의 구조개선사업 수혜비중은 5.5%에 불과</p> <p>또한 <b>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사업은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의 매출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기업이 지원받기 힘들다.</b></p>	<p>중소기업청은 <b>여성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 배분을 확대</b>하고 여성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매업 등의 업종에는 지원되지 않는 구조개선사업의 비중은 축소하고 <b>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사업 등 여성친화적인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은 확대</b>하였다.</p> <p>*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자금 규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06년</th> <th>'07년</th> </tr> </thead> <tbody> <tr> <td>구조개선사업</td> <td>9,700억</td> <td>8,850억</td> </tr> <tr> <td>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td> <td>948억</td> <td>1,000억</td> </tr> </tbody> </table>	구 분	'06년	'07년	구조개선사업	9,700억	8,850억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948억	1,000억
구 분	'06년	'07년								
구조개선사업	9,700억	8,850억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948억	1,000억								

○ 사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경상북도, 2011)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병역을 필한자를 우선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용</p> <p>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2. 행정경력이 많은 자</li> <li>3. <u>병역을 필한 자</u></li> </ol>	<p>채용과 관련한 우대 사항이 정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전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임용</p> <p>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p> <p>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lt;개정 '09.6.25, '11.8.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직무관련 자격증소지자</u></li> </ol>

□ 의사결정분야

○ 사례

국세청 조사 분야 여성 인력 활용 강화(국세청, 2008)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국세청의 경우 '07년 여성인력은 전체의 2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점차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세원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b>조사 분야의 경우 여성인력 배치율이 저조하였다.</b> 특히 <b>지방청 조사국 여성인력은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다.</b></p> <p>※ 전체 조사 분야 여성인력 비율 : 15.5%('07)</p>	<p>국세청은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여성의 조사 분야 근무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b>2008년 2월 경기 인사이동 시 지방청 조사국별 현원의 18%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였다.</b></p> <p>※ 지방청 조사국 여성인력 비율: 12.0%('07)→18.4%('08)</p> <p>또한 지방청 조사국의 여성비율을 높인 후의 설문조사 결과 여성인력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로 사기 진작에 긍정적(65.0%)이라고 평가했다.</p>

## □ 교육·직업훈련분야

## ○ 사례

## 여성 과학기술 홍보대사 위촉 확대(교육과학기술부, 2005)

##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성 홍보대사는 2005년 기준 전체의 10.5%에 불과**했다.

이는 **인문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여학생의 현실과 여학생들은 여성 홍보대사의 강연을 들었을 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흥미가 늘었다**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여성 홍보대사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04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계열별 분포

성별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남자	46.2%	<b>41.2%</b>	12.6%
여자	61.8%	<b>10.7%</b>	17.5%

(출처 :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05)

\* 홍보대사 강연 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 증가 여부 설문조사

성별	남성 홍보대사		여성 홍보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자	2.60	.836	2.54	.887
여자	2.23	.777	2.57	.813

(출처 :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05)

##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과학기술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자천 방식의 홍보대사 위촉 방식의 취지는 좋으나, 저조한 여성 홍보대사 비율을 높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거주 지역 및 전공 분야에 따른 적정한 여성 홍보대사 비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홍보대사들로부터 동료를 추천받는 '동료 추천제' 위촉 방식을 도입하여 여성 과학기술 홍보대사의 비율을 2006년 36.6%까지 상승시켰다.** 여성 과학기술자의 활약이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2008년 11월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대한민국 우주에 서다! (1st Korean Astronaut)' DVD가 제작되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됨

I

II

III

IV

V. 참고자료

□ 안전분야

○ 사례

여성친화 “경기 김포신도시”(경기도, 2006)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도시기능에 대한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의 혜택 등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 없는 김포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목동신시가지와 분당신도시의 기존 신도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명이 어두운 교통승강장, 교통환승장</li> <li>-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두운 공원</li> <li>- 방범취약지역 CCTV 미설치 등</li> <li>- 단차가 많은 도로 환경</li> <li>- 여성을 고려한 주차공간 부족</li> <li>-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 포장</li> <li>- 공원 내 여성을 고려한 체육 공간 부족</li> <li>- 남녀화장실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 미설치</li> </ul>	<p>이에 김포시는 여성건강 및 보편이 보장된 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김포 신도시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9월 승인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보행로 및 이용공간에 대한 <b>밝은 조명 및 CCTV 설치</b></li> <li>-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 전체를 걸을 수 있도록 연결된 보행로망</li> <li>- 산책로 조성 시 <b>여성의 보행환경 및 유모차 등을 고려한 포장재료 사용</b></li> <li>- <b>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및 수유실 설치</b></li> <li>-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li> <li>- 가족 또는 여성을 고려한 체육공간 조성</li> <li>- 생활권별 탁아시설 설치 등</li> </ul>

## ○ 사례

### 여성이 안전한 공원 “서울숲”(서울특별시, 2007)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p>서울 숲은 2003년 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완공되었으며 현재는 문화, 생태 프로그램, 체육시설, 테마공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p> <p>2007년 공원 이용자의 성비는 주말의 경우 남성 53.7%, 여성 50.3%이며, 주중의 경우 남성 54.4%, 여성 45.6%였다. <b>주말, 주중 모두 여성의 이용률이 낮았으며</b>, 모집단인 서울시민의 성비 남성 49.7%, 여성 50.3%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서울숲 공원 이용률이 남성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p> <p>또한 <b>공원 접근성에서 남녀 모두 만족도가 낮았는데, 여성의 경우 버스노선 부족</b>, 보행로 안전 위협 등에서, 남성의 경우 운전 중 공원 안내표시판이 보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특히 <b>여성들이 공원이용과 관련하여 특수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안전문제 혹은 범죄 불안이었다.</b></p>	<p>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공원 「여행공원 조성 계획」을 '09년 6월 수립하고 여성이 안전한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안전한 공원 조성 : <b>공원 내 3개소 CCTV를 추가 설치, 야간경비 인력 보강하여 24시간 경비 체제 운영, 취약시설 2개소 보안 경비 추가</b></li> <li>-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b>7개 버스노선 서울 숲 경유 운행</b></li> <li>- 잔디개방 쉼터, 수유실,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시설 확충</li> <li>- 서울숲 문화캠프, 주말가족생태나들이 등 가족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다수 운영</li> </ul>

I

II

III

IV

V. 참고자료

□ 해외사례

○ 사례

Women and Tobacco(호주 빅토리아주, 2010)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에게 미치는 흡연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기관지염, 자연유산, 자궁외 임신, 조산, 저체중아 출산, 조기폐경, 골다공증, 뇌졸중, 자궁경부암 유발</li> </ul> </li> <li>- 성별고려된 담배광고와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업계는 담배 여성구매자의 특성을 공략하여 광고와 마케팅함 담배에 대한 여성이 갖는 이미지는 지적인, 세련된, 식욕억제 패션소품, 자진축진, 자유임</li> </ul> </li> <li>- 흡연과 관련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흡연, 또래집단의 압력(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 체중증가의 두려움, 소외계층, 젊은 엄마와 단독양육, 스트레스, 우울증 및 기타 정신 질환, 폭력 및 외상, 형편없는 신체 건강, 원주민 상태, 동성애자</li> </ul> </li> <li>- 보건예방 및 중단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기준제시(캠페인: 금연가=건강한 젊은 여성의 이미지), 친목, 운동, 임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태아건강보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맥락(policy con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광고 금지, 흡연반대 캠페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담배가격 조정, 무지포장(plan-packaging, 2012년 7월 세계최초 시행, 로고, 브랜드이미지, 컬러, 광고문구 금지)</li> </ul> </li> </ul>

## ○ 사례

자녀양육 여성을 고려한 마약퇴치 사업(오스트리아 빈, 2007)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는 마약퇴치 관련 치료 및 교육 사업에서, <b>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여성 환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마약 치료에서 불리하였다.</b>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성 분석을 실시하여 장기간 마약퇴치 관련 치료가 필요하나 <b>어린 자녀가 있어 치료를 받기 힘들었던 여성을 위하여 양육시설을 건립할 계획</b> 을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시설에 어머니와 자녀가 동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 보조지원 사업도 계획하였다.

## ○ 사례

남성의 당뇨병 검진 기회 확대(캐나다 보건국, 2004)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캐나다 보건국은 당뇨병의 경우 여성은 20대말이나 30대 초반에 증세가 가벼운 상태로 발견되지만, 남성은 중년이후 증세가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여성은 <b>출산전후 검진을 통하여 당뇨병을 조기발견하게 되지만, 남성은 병세가 지각된 이후 검진함에 따라 합병증이 수반된 중증의 상태에서 당뇨병을 발견하기 때문</b> 이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은 식이요법이나 가벼운 약물치료로 증세가 호전되는 반면 남성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졌다.	국가가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캐나다는 <b>남성들도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기회를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b> 하였다. 이에 따라 당뇨병의 조기 치료 효과와 함께 치료를 위한 국가예산도 줄일 수 있었다.

I

II

III

IV

V. 참고자료



### 3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 가. 국내 사이트

-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개발. 구축한 성인지 통계 정보 포털.  
 본 시스템은 기존 통계를 영역별로 재정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를 성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 성인지 통계DB(<http://gsis2.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일환으로 구축한 지역  
 성인지 통계DB.  
 본 DB는 지역 성인지 통계뿐 아니라 도표로 보는 지역 성인지 통계, 지도로  
 찾아가는 지역 성인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에 접근할 수 있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내외 주요 통계를 영역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음.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통계간행물, 유치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정책통계, 교육예측통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DB가  
 구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http://www.moge.go.kr>)  
 HOME>정책자료>통계자료: 여성가족부 승인통계, 성차별, 성폭력 등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함.

## 나. 국외 사이트

- UNECE Gender Statistics Website(<http://www.unece.org/stats/gender>)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회원국 통계청과 연합하여 개발한 성인지 통계 웹사이트로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
- Gender Stats(<http://www.worldbank.org/genderstats>)  
World Bank가 운영하는 성인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국가 통계와 UN 데이터 베이스, World Bank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회조사 내용들을 제공함.
- OECD SIGI(<http://www.genderindex.org>)  
OECD Development Centre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양성평등의 이론적 개념, 경험적 근거 및 정책적 측면 등 포괄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특히 통계와 측정 도구에 초점을 둠.
- UN WOMEN(<http://www.unwomen.org>)  
UN의 여성정책 통합사이트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UN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함
- UNSD(<http://unstats.un.org>)  
UN 통계처 사이트로 UN의 여성과 남성 관련 사회지표 등 UN 통계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책자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정보를 제공함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발행일 | 2013년 1월

발행인 | 김금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전화 | TEL : (02)2075-4652~55

팩스 | FAX : (02)2075-4787

홈페이지 |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02)736-2866~7